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41호 2021. 12. 27.(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71호)
-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72호)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73호)
-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74호)
-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75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76호)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77호)
-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78호)
- 예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479호)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80호)
-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481호)

규 칙

-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예천군 규칙 제130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71호

예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3.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

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4.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유통·공유·전시·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아동·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예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
2. 아동·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 내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4.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
6. 그 밖에 아동·여성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예천군의회 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응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관련 기관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및 단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여성 대상 폭력예방 사업
2.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사업
3. 아동·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경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2조)

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 아동·여성의 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제5조)

-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라. 지역연대의 기능에 관한 사항(제7조)

-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
-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 등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72호

예천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예천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예천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장소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예천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을 홍보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자발적인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2조)

나.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다. 헌혈장소 지원 및 헌혈홍보·정보제공(제6조 ~ 제7조)

-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의 요청에 의한 행정적 지원
-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및 군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를 통해 홍보 및 정보제공

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제8조)

-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 가능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73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예산 계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도비 보조사업인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교부금의 경우
4.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보조금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

③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등은 군이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별도의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라 검토된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별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2. 위촉직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
2.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8.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9.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 시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보조금의 교부 및 보조사업의 수행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군수는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 시 수급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규모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가 있는지 여부
2. 중복 수급 해당 여부
3. 과거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4. 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① 군수는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지원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7조제2항의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교부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내용 등)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등의 산출기초(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구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를 따른다)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부담금의 부담능력 유무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7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한 조건서를 제15조에 따른 교부결정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9조(교부방법) ① 군수는 반드시 보조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 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교부방법을 정한 경우
- ③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하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 ④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 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 ⑤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사업의 수행 등)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③ 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사업을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

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⑦ 보조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이월금액, 이월사유, 이월액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이월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⑧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비목(편성목) 및 보조세목(통계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⑨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자기부담금) ①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 ② 사업규모 등의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은 자기부담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 교부결정 및 교부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군수는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22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와 군수가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사업이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에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그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제25조(보조사업 운용평가) ①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 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중요재산의 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40년

2. 부동산(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

타르조, 기타의 구조): 20년

3. 선박 및 항공기: 12년

4. 그 밖의 중요재산: 「내용연수」 별표 1, 별표 2 내용연수표 준용

⑥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제5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5장 신고포상금

제28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가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 등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신고인 등은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인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제30조(포상금 지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피신고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 등이 익명,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31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고인 등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1. 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2. 법률 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고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신고인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 관계, 법률관계 및 신고인 등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환수 여부 및 금액을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방법 등을 신고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 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예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예천군 신활력플러스 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예천군 지역생산물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및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예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예천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보 조 금 교 부 결 정 서

제 호

1. 보조금교부 결정 및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원

가. 보조금 교부 결정액 원

나. 보조사업자 부담금 원

위와 같이 보조금을 결정하니 별첨 조건을 준수할 것

예 천 군 수 직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조 건

1. 보조사업자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 및 규정, 교부 목적과 내용 및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의 내용의 변경 또는 경비의 배분, 기타 사전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을 인계·중단·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사업을 완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에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한 정산서 2통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5.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6. 군수는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명단 공표
 -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수행 배제
 - 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 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7.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등의 금액을 확정할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8.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나.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라.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에 대한 시험 연구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한다)

마.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9. 보조사업자는 선금을 신청할 경우 그 선금의 집행계획이 명시된 선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 선금의 집행내역과 정산에 대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시 보조사업자와 사업수행자 간의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다. 담보의 제공

11. 다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한 경우와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서류 및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중요재산 현황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도비 : 시군구비 :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¹⁾	명칭 면적(m²)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이
한
기

예천군수

직인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 ¹⁾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앞쪽)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신청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②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예천군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④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⑤포상금 신청금액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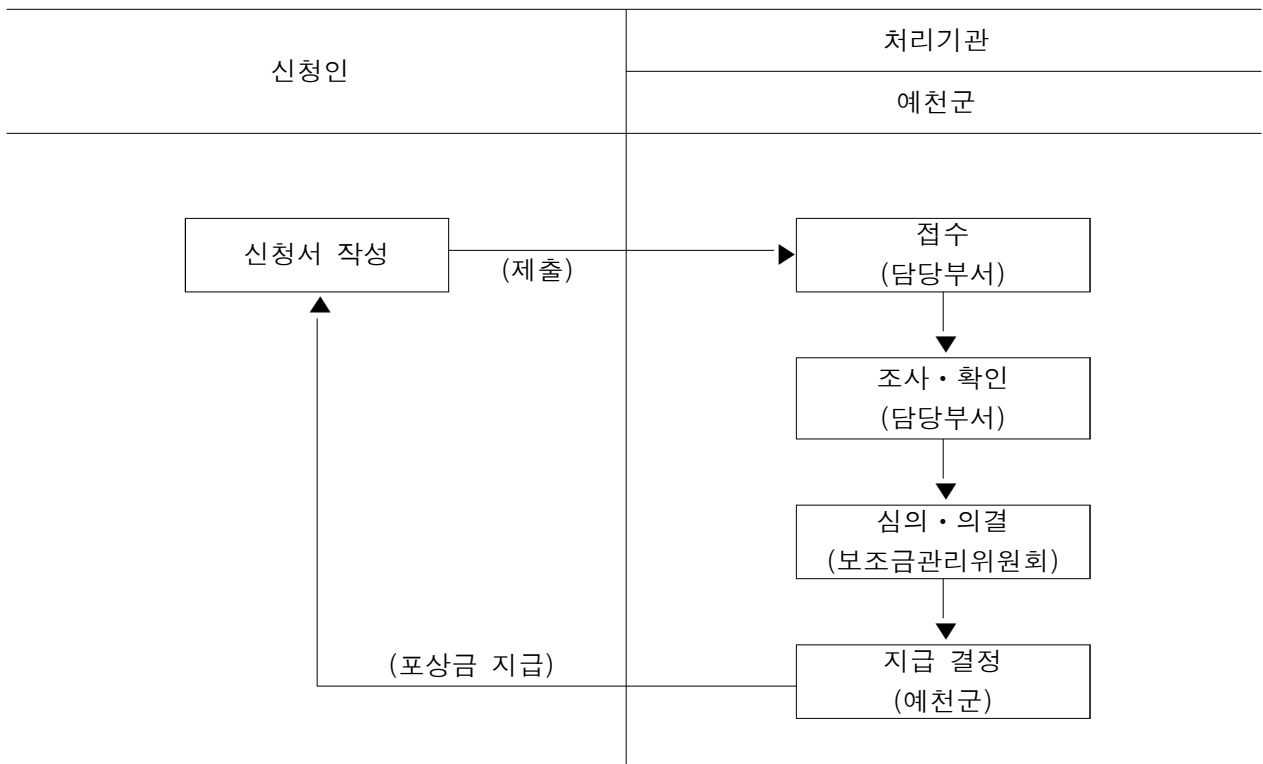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신고인 등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등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란에는 신청인이 신고일자와 신고내용의 요지, 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자, 처리결과와 요지를 기재합니다.
3. ③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신고를 이 유로 다른 법령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4. ④란에는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명과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⑤란에는 포상금 지급 신청금액을 기재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	신청인 인적사항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		결과 통지일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접수 부서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인용 여부	포상금 (단위 : 원)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	--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49 -

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대상사건	사건명		
	피심인 (피조사인)		
	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주문	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신청기각)
		이유	

우리 군에서 결정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예 천 군 수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포 상 금 결 정 이 의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결정사항	결정일자	20 년 월 일			
	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군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일 일

이의신청인 (인)

예천군수 귀하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에 대한 근거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신청, 수행, 사후관리 등 보조금 전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지방보조금,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자 용어 정의

나. 보조금 예산의 편성(제5조)

- 보조금 예산의 편성 단가 및 공통기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마련

다.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6조 ~ 제12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규정(당초 보조금심의위원회 승계)

라. 보조사업자의 공모 및 선정(제13조 및 제14조)

- 공모의 기간 및 방법,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규정

마. 보조금의 교부 및 보조사업의 수행(제15조 ~ 제24조)

- 보조금 교부조건과 교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 보조사업자의 의무와 자기부담금 집행 기준 규정
- 군의 보조사업 관리·감독 및 실적보고 검사

바.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제25조 ~ 제27조)

-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3년 이상 지원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중요재산의 관리 및 부기등기

사. 신고포상금(제28조 ~ 제34조)

-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
- 신고포상금의 신청, 지급, 환수 및 이의신청 등 기준 마련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74호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따른 마땅한 예우를 위해 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제9조제1항)

- 현행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 개정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75호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인”을 “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따른 마땅한 예우를 위해 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로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 폐지(제3조)

- 현행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개정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76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33명”을 “75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722명”을 “74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1명”을 “1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
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예천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759	369	14	108	41	26	201
정무직 계	1	1	—	—	—	—	—
군수	1	1	—	—	—	—	—
일반직 계	716	360	14	78	37	26	201
4급	2	1	—	1	—	—	—
4급 내지 5급	3	3	—	—	—	—	—
5급, 5급 내지 연구관 또는 지도관	33	13	3	2	3	1	11
6급 이하	675	341	11	74	34	25	19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	—	—	—	—
별정직 계	—	—	—	—	—	—	—
6급 상당 이하	—	—	—	—	—	—	—
연구직 계	8	5	—	—	3	—	—
연구사	8	5	—	—	3	—	—
지도직 계	34	3	—	30	1	—	—
지도관	3	—	—	3	—	—	—
지도사	31	3	—	27	1	—	—

◇개정이유

민선 7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구현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733명 ⇨ 759명 / 증 26명(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745명 / 증 23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4명 / 증 3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조정(별표 3)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비고
현 행	733	353	11	113	41	215	
개정안	759	369	14	108	41	227	
증 감	+26	+16	+3	-5	-	+12	

다.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일반직(별표 3)

구 분	계	정무직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692	1	2	3	32	165	198	171	117	3
개정안	717	1	2	3	33	172	206	178	119	3
증 감	+25	-	-	-	+1	+7	+8	+7	+2	-

라.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 - 연구·지도직(별표 3)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1	-	8	3	30
개정안	42	-	8	3	31
증 감	+1	-	-	-	+1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77호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건설교통과”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중 “의료보호”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나목, 라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중전의 제14호)라목을
삭제한다.

13. 농촌활력과장

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농촌생활환경정비, 일반농산어촌개발에 관한 사항

다. 농업생산기반 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농촌활력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장”을 “농촌활력과장”
으로 한다.

◇개정이유

민선 7기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구현을 위한 인력 기반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건설교통과를 건설교통과와 농촌활력과로 분리(제3조)

나. 주민복지실과 건축과 간 업무분장 조정(제3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78호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관리담당”을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3. 예천소방서장

6.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예천군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정비하여 재난관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 변경(제3조)

- “문경소방서장”을 “예천소방서장”으로 변경
- “예천교육장”을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변경
- “안전관리담당”을 “안전관리팀장”으로 변경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79호

예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연령·주 활동지를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시·군·구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고,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제3조 ~ 제5조)

-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대학교수, 전문가, 안전 교육을 받은 자,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함
-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함
-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대표, 부대표로 위촉함

다. 안전보안관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 및 제7조)

- 안전보안관은 안전위반 행위 신고,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함
-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라. 안전보안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제8조)

- 안전보안관 해촉 시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함

마. 안전보안관의 포상에 관한 사항(제9조)

-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포상할 수 있음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80호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천군이 관리운영하는 공설운동장, 예천군문화체육센터,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스포츠 종합레저타운, 게이트볼장, 공설테니스장, 군민탁구장(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예천군 체육시설”로, “사용에 관하여”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본액”이란 기본사용료를 말한다

12. “성인”이란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3.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전용사용료, 이용료”를 “전용사용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경로자, 군인”을 “군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 용 사 용 료

시설명	사용목적	기준	요 금		비 고
			평 일	토·일요일,공휴일	
예 천 스타디움	체 육 행 사	주간(1일)	20,000원	30,000원	○ 야간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
	체 육 외 행 사	주간(1일)	40,000원	60,000원	
문화체육 센 터 및 양 궁 장	체 육 행 사	주간(1일)	30,000원	40,000원	
	체 육 외 행 사	주간(1일)	60,000원	80,000원	
선 수 단 생 활 관	체육대회 및 전 지 훈 련 선수단 편의	2실(1일)	50,000	50,000	○ 관내 숙박시 설 부족시
스포츠종합 레저타운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 육 행 사	주간(1일)	무료	무료	

※ “체육행사”란 운동 경기만을 말하며, 무대사용, 공연 등부대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육외 행사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예천군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인 주 소 (단 체)						성 명 (단 체)							
사 용 일 시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전 화							
사 용 시 설 명													
사 용 료	기 본 사 용 료												
	앰 프 료			(마이크 대, 확성기 조)									
	라 이 트 사 용 료												
	기 타												
	계												
관람료		지정석		원 성인 원		청소년 군인		원 어린이 노인		원			
입장예상 인원		임 원		명 선수		명 관람자		명					
경기용품 및 비품사용		본부석											
		경기장											
		기 타											
게 시 물 종 류						장소				수량			
위와 같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이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인 예산군 수 귀하													

◇개정이유

- 예천군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비(제1조)

- 예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용어 정비

- “이용자, 이용료” 정의 삭제(제2조제4호 삭제 및 제2조제8호)
- “어른”을 “성인”으로 하고 범위 명확화(제2조제12호)
- “노인”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13호)

다. 체육시설 사용료 중 이용료 삭제(제4조제1항)

라. 초과사용료 중 이용료 부분 삭제(제6조제1항제2호 삭제)

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규정 신설(제7조제2항)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바. 체육시설 운영 시간 조정에 관한 규정 신설(제12조제3항)

사. “공설운동장”의 명칭을 “예천스타디움”으로 수정(별표 1)

아. 이용료 삭제(별표 2 삭제)

자.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중 “어른”을 “성인”으로 수정(별지 제1호서식)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81호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제12조 관련)

[기본시설사용료]

구 분 시설별	단 위	기 준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청 소 년 극 장	1 일	(09:00 ~ 22:00)	140,000	180,000	
	오전	(09:00 ~ 12:00)	45,000	60,000	
	오후	(13:00 ~ 17:00)	60,000	75,000	
	야간	(18:00 ~ 22:00)	70,000	90,000	
실 내 집 회 장 (세미나실 및 전시실)	1 일	(09:00 ~ 22:00)	100,000	130,000	
	오전	(09:00 ~ 12:00)	30,000	40,000	
	오후	(13:00 ~ 17:00)	40,000	55,000	
	야간	(18:00 ~ 22:00)	50,000	65,000	

[부대시설사용료]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원)	비 고
청 소 년 극 장	조 명	1일	50.000	• 사용자가 별도로 필요로 하는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사용 시 사용료를 징수한다. - 다만, 일반행사만을 위한 대관 시 조명, 음향시설(유선마이크,앰프)은 무료임
		1회	20.000	
	빔 프로젝트	1일	50.000	
		1회	20.000	
	음향	1일	50.000	
		1회	20.000	

※사용기준 : “1일”은 09:00~22:00까지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임

[냉 · 난방기 사용료]

장 소	기준	단위	사 용 료(원)	비 고
청 소 년 극 장	냉방 · 난방	1 일	7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지칭한다.
		1 회	30,000	
실 내 집 회 장	냉방 · 난방	1 일	50,000	
		1 회	20,000	

☐ 실내수영장

(단위 : 원)

구 분	일 반	청소년	어린이	비 고
1일	3,000	2,000	1,500	※ 단체 입장 시 30% 감면
1개월	60,000	40,000	30,000	

☐ 체력활동장

(단위 : 원)

개방시간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 반	
06:00 ~ 21:00	무 료	무 료	※ 13세 미만의 사람은 사용을 제한함

☐ 작은도서관

(단위 : 원)

개방시간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	일 반	
09:00 ~ 21:00	무 료	무 료	※ 도서열람 및 대출 09:00~18:00

◇개정이유

- 지자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사용범위(이용대상)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대상자를 추가하여 보훈대상자 등을 예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관 사용범위 삭제(제7조 삭제)

나.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의 감면 대상자 추가(제13조제1항제2호)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의사상자법, 국군포로송환법에 따른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

다.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별표 수정(별표 1)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27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01호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규칙을 폐지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예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